

# 검 토 보 고 서

2026. 4. 21.(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 1. 제안경위

- 제안자: 마포구청장(복지정책과)
- 제안일: 2026. 4. 8.
- 회부일: 2026. 4. 15. (의안번호 : 26-37)

## 2. 제안이유

- 동일 대상자에 대한 지원수당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고, 수당 간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동일대상자에 대한 지원수당의 중복지원 방지 근거 명확화(안 제3조)
- 나. 수당 간 중복지급 방지 규정 추가(안 제10조)(안 제10조의2)
- 다. 조문 해석상 혼란 방지를 위한 표현 정비(안 제12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8조(예우와 지원의 원칙)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2026. 3. 5.~ 3. 25.(제출된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확한 수당 지급기준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동일대상자에 대한 지원 수당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고, 수당 간 지급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는 동일대상자에 대한 지원수당의 중복지원 방지 근거를 명확화하고,
  - 안 제10조 및 안 제10조의2에서는 참전수당은 제8조에 따른 보훈수당과 중복지급하지 않는 규정과 배우자 복지수당의 중복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음.

○ 종합검토의견

우리구는 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원 목적 내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수익적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당간 지급기준의 형평성과 제도운영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중복지급 방지조항을 명확화 하는 것으로 중복자격 인정 관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어 이번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복지정책과	김은숙 (8810)	강은영 (88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선희정
연 락 처	02-3153-8807

# 참고 자료

## 1. 관계법규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자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 2. 국가보훈대상자 현황(2026. 3월 기준)

(단위: 명)

계	독립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	전상·공상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무공·보국 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4.19, 5.18 관련	보훈보상 대상자	제대군인
4,452	75	1,103	1,576	213	877	16	46	43	503

※ 보훈자격 중복 보유자: 820명(중복자를 제외한 실인원: 3,632명)

## 3.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현황

구분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명절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예상인원	2,200명(월)	1,200명(월)	150명(연)	3,400명(회)	200명(월)
지원액(인) / 지급시기	10만원 / 월 (3만원 인상)	10만원 / 월 (3만원 인상)	20만원	5만원 / 2회 (설·추석)	10만원 / 월 (3만원 인상)
예산(2026)	2,640,000천원	1,440,000천원	30,000천원	340,000천원	240,000천원